『기업 QR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기업QR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조건, 고객과 은행 간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은행" 계좌 간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제휴사의 "ROAD서비스"를 통해 가맹점과의 대금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기업QR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이 제휴사의 "가맹점"과 사전합의를 통해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또는 이용 시 제휴사의 "ROAD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사의 지정된 계좌로의 출금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제휴사"는 ㈜큐뱅"(이하 "큐뱅")과 ㈜아이엘케이코리아(이하 "ILK")를 말하며, "은행"과의 제휴에 따라 "ROAD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가맹점과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를 위한 망을 운영 및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ROAD서비스"(이하 "ROAD")란 "제휴사"가 "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제휴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과 결제대금의 정산, "은행"의 "고객"에게 캐시백을 지급, 취소 및 환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고객"이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 중에서 기업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해진 확인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한 고객을 말합니다.

⑤ "기업인터넷뱅킹"이란 인터넷을 통해 기업고객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조회, 자금이체, 전자결제, 외환수출입 등의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⑥ "가맹점"이란 제휴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ROAD"를 통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과 결제대금 정산이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⑦ "결제인증""이란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의 "서비스" 이용 시, 제휴사가 "은행"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결제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확인한 후 "ILK"의 지정계좌로 출금결제를 위해 OTP, 공인인증서 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⑧ "서비스이용동의"란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의 "서비스"이용 권한을 부여한 "고객"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한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여 "ILK" 지정계좌로 이체를 완료하고, "제휴사"의 "ROAD"를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고객"의 전자금융 거래 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⑩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를 준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정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99-0138(4-1) (2026.07 제정)
(보존년한 : 영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59 호(2026.06.11)

하나은행

④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이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의 이용은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은행"의 고객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객이 기업 인터넷뱅킹 내 "서비스" 메뉴를 통해 서비스이용 동의를 완료하면,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및 제7조(서비스 이용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동의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이 대신하게 하거나 가입정보 등을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서비스" 가입신청 시점에 거래중지, 사고등록 등으로 등록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불가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이 약관 기타 "은행"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고객"은 매일 24시간 동안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제휴사"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시 "제휴사"가 제공하는 결제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 등)의 조회 · 확인 및 "ILK"의 지정계좌로의 출금결제업무만을 수행합니다.

③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출금결제 완료 후 제휴사가 "ROAD"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에 제공하는 캐시백 지급, 결제대금정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 이용전 제휴사 및 "가맹점"과 사전 합의된 방식에 따라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제 정당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임직원이 기업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서비스" 내 "QR결제등록" 및 등록자 결재 상신 후 결재자는 다음날까지 결재가 가능하며, 미결재 또는 결재완료 후 미실행에 따른 기한경과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휴사"가 제공하는 "ROAD"에 대한 부가혜택(캐시백)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휴사"의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와 "가맹점"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은행"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서비스의 제한)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오류로 입력한 경우
2. 1회/1일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수단 등의 도난 분실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4. 시스템 과부하 등 부득이 "서비스"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기술적 장애 사유가 고객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5. 해킹, 보안사고,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고 신고 계좌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다.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포함) 부족계좌
   라. 발급기준일을 당일로 하여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마.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록계좌

② "은행"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보안, 천재지변 등과 같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7-99-0138(4-2) (2026.07 제정)
(보존년한 : 영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59 호(2026.06.11)

하나은행

제8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반 설비의 긴급한 시스템 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량 급증으로 "서비스"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은행" 또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5. "제휴사"와의 업무제휴계약이 종료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보안, 천재지변 등과 같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휴사에 의한 거래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입금)

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를 통해 "ILK" 지정계좌로 출금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은행"을 통한 거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며 "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가맹점"에 요청하여 "가맹점" 및 "제휴사"의 승인에 따라 환불 또는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결제금액의 입력 오류, 이중 결제 등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2. "제휴사" 및 "가맹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3.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

③ 취소 또는 환불이 승인된 경우, 환불 금액은 "제휴사"인 "ILK"가 기 지급된 캐시백을 정산한 후 "고객"의 출금계좌로 재입금합니다.

④ "고객"의 "가맹점"에 대한 취소, 환불관련 요청은 원거래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환불 처리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한도)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으며, "고객"의 기업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와 동일하며 기업인터넷뱅킹 이체한도에 포함(합산)하여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체거래한도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한도제한 계좌 등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계좌일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수수료)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발행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은행" 또는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고지됩니다.

② 이용 수수료 변경 시 제3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12조 (이용 중단)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하는 "고객"은 기업인터넷뱅킹 내 "메뉴/업무권한" 화면에서 "서비스" 이용 중단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서비스" 중단 처리 완료 시 "고객"이 "제휴사"의 "ROAD"를 통한 결제시 연계된 출금이체업무 중단, "큐뱅"이 "은행"에 제공하는 결제정보의 전송 중단 등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휴사의 "ROAD"와 연계한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결제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99-0138(4-3) (2026.07 제정)
(보존년한 : 영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59 호(2026.06.11)

하나은행

제4장 손해배상 등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보안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보안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보안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보안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보안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고객으로부터 보안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6조 (고객과 제휴사와의 분쟁 해결)

① "ROAD"관련 결제대금의 정산대사 및 지급, 캐시백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과 "제휴사"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가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자체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거래취소나 환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과 "제휴사" 또는 "가맹점"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의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또한 서비스의 변경, 제한, 정지 등의 중요 사항은 "고객"이 "은행"에 지정 또는 등록한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에 게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관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7-99-0138(4-4) (2026.07 제정)
(보존년한 : 영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약관-059 호(2026.06.11)

하나은행